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김보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4
----------	------

발의연월일 : 2019. 3. 4.

발의의원 : 김보경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여 군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1조 ~ 제4조)
-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방법 및 비용부담을 정함(안 제5조 ~ 제6조)
- 건립대상 심의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등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정함(안 제9조)
- 공공조형물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정함(안 제13조 ~ 제14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
 - 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 다. 상징탑·기념비· 동상 등 상징조형물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주관부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이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건립 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건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2. 건립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③ 신청절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건립대상 심의기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과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및 지역 정체성과의 부합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및 장소의 적합성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8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및 가로명 등과 건립 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3. 그 밖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 관광업무관련 담당국장, 총괄부서장, 도로 및 공원 등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명

나. 공공조형물 관련 전문가: 2명 이내

다. 관련 지역 주민대표 등: 2명 이내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위원 본인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 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 의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⑤ 군수는 위원이 제2항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공공조형물의 활용)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의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공항·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를 받아들이기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가격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표자가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성명·주소 및 기부 재산 등을 적은 명세서를 제1항의 기부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이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대차(轉貸借)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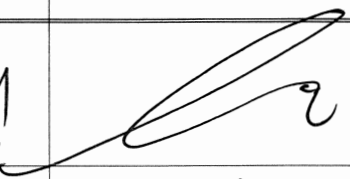
1. 전대(轉貸)하려는 재산의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수익방법 및 사용·수익기간 3. 해당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수익하려는 자의 성명 및 주소

④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2. 재산 가액(價額)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3. 무상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서 명 날 인 서

의 원 명	서 명	날 인
김 보 경	김 보 경	
신 동 윤	신 동 윤	